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00호)

1. 의안명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7. 11. 14

나. 제출자 : 중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 : '97. 11. 15

라. 위원회 상정 : '97. 12. 15

3.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국장)

가. 제안이유

- '97. 10.1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 구제제도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과 전문외부인 비율을 동수로 하여 지명또는 위촉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 되었음.

다. 관련법 검토

- 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 적부심사)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5항

라.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감진상)

-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주 목적을 두고 '97. 10.1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 고지서가 발부된 이후 이의 신청 등 사후 구제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세심의 위원회를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로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
----------	-----

제출년월일 : 1997. 11.

제출자 : 중구청장

1. 제안이유

- '97. 10. 1.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이후 지방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등 사후구제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등 실질적으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과세전 구제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과세 전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바 본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70조(과세전적부심사)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5항

3.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 제15조 "구세심의위원회"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15조 전면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심사
 - 위원장 및 위원 임기 : 2년
 - 예산의 범위내 수당, 기타 실비 지급
- ※조례로 정한 구세심의위원회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 하였으므로 불필요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
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
하“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5조(구세심의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한다.	③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간으로 한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구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	현 행	개 정	조항	현 행	개 정
		<p>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점 보를 제공받아 할게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협정 기타 법률에 의한 법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70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담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통지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부령으로 정한다.</p> <p>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p>			<p><신 설></p> <p>제53조(수정신고) 및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p>

개정규칙 신·구 대조표

현 행	기 정
제26조(징수교부율)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대한 도세징수 교부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6조(징수교부율)----- ----- 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의 징수교부율-----
제31조(설득)	<삭. 개>
제33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삭. 개>
제33조의3(분과위원회)	<삭. 개>
제33조의4(위원회과 부위원장의 직무)	<삭. 개>
제33조의5(위원회의 회의)	<삭. 개>
제33조의6(분과위원회의 회의)	<삭. 개>
제33조의7(의견침침)	<삭. 개>
제33조의8(간사동)	<삭. 개>
제33조의9(유영세칙)	<삭. 개>
제34조(금전공탁),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공탁과 그 통지는 빌지 제39호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금전공탁)----- ----- ---빌지 제35호서식 및 빌지 제36호서식-----
제35조(증표)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빌지 제41호서식에	제35조(증표)----- ----- ---빌지 제37호서식-----

현 행	기 정
의한다.	-----
<신. 설>	제36조(세무조사의 봇지 등)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제36조의2(파세전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봇지)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봇지"란 같은 비파세 또는 간민의 신청을 반려하는 봇지를 말한다.
<신. 설>	제36조의3(파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절차 등) ①파세전적부심사청구는 법 제70조제1항 각호의 봇지

현 행	기 정	현 행	기 정	
<p>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별 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시·군 서는 시장·군수에게, 도서는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파세전직부실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세 전직부실사위원회(이하 이 조의 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시·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도의 경우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 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 사를 동수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차이 지역 또는 위촉한다.</p> <p>④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구서 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위원회 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p>		<p>갖할 수 있다)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 를 빠지 제41호의2서식에 의한 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는 결정</p> <p>2.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p> <p>3. 제1항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기타 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사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p> <p>⑤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p> <p>⑥37조(수정신고납부절차 등)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 고납부를 하자 하는 자는 담 초에 신고납부한 시·군에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한 수정신고</p>		

<신 설>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	현 행	기 정	조항	현 행	기 정
		<p>(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담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4)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p>			<p>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자체업이 번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담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서면으로 담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58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번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나무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부과위원회·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부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p>
		※ 1998. 3. 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	현 행	개정	조항	현 행	개정
		<p><u>제79조(청구의 효력 등)</u>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지치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p> <p><u>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사항에 관한 의견은 그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위원회의 의견로 본다.</p>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으로 한다.</p> <p>⑤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무부 소속 광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⑥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제80조(감사원심사청구의 청구기간)</u>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뜻지를 받은 때에는 그 뜻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남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59조(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의견에 필요한 의안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p>
		<p><u>제81조(행정소송)</u> ①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볼</p>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p><u>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파오남부세액의 환부를 요구하는 신고로서 파오남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와 날의 다음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파오남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파오남부세액이 있다는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8조(이의신청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41호의 4서식에 의한다.</p> <p>② 영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41호의 5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부한다.</p> <p>③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심</p>		<p><u>사청구는 별지 제41호의 6서식에 의한다.</u></p> <p>④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별지 제41호의 7서식에 의하여 베일증명우편으로 한다.</p> <p>⑤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별지 제41호의 8서식에 의한다.</p> <p>제39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장에서 위원장이 후선하는 위원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지방자치단</p>
<신 설>		<신 설>	

현 행	기 정
	<p><u>제의 차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u></p> <p><u>②</u> <u>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 무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내무부의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1인은 내무부의 차관보가, 다른 1 인은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 하는 위원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 재국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 격을 갖춘 자중에서 내무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u></p> <p><u>③</u>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회의 위원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u></p> <p>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 는 4급이상(시·군의 경우에는 5급이상)의 공무원</p> <p>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빙 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p> <p>3.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 에 3년이상 종사한 자</p>

현 행	기 정
	<p><u>4. 감찰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u></p> <p><u>5. 대학에서 법학·회계학 또 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 직하는 자</u></p> <p><u>6. 기타 지방세재판에 관하여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p> <p><u>제39조의2(분파위원회) ①에 제5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파위 원회 중 지방세재판파위원회는 지방세재판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심사청구분파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과세표준분파위원 회는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심의·의결한다.</u></p> <p><u>②</u> <u>분파위원장과 분파위원회 위원 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 명한다.</u></p> <p><u>제39조의3(위원장과 부위원장의</u></p>

현 행	개 정
	<p><u>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 원장을 포함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u></p> <p><u>②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동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p> <p><u>제39조의4(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u></p> <p><u>② 간사와 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부부속 출무원증에 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내부부장과이 지명한다.</u></p>
<신 설>	<p><u>제39조의5(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u>제40조의2(건설기계의 범위) 범위 제104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u></p>

현 행	개 정
	<p><u>건설기계는 건설공사용, 부동나 공학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u></p>
	<p><u>제40조의5(부동산시가표준액의 결정) ①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u></p> <p>1. · 2. (생 약)</p>
	<p><u>제40조의6(건물 및 선박의 가액결정에 따른 승인신청등) ①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에게 자문을 한 후 조례가 정하는 날 헌재의 결정문에 대하여 그 결정일전 6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승인신</u></p>
	<p><u>제40조의6(건물 및 선박의 가액결정에 따른 승인신청등) ② 제40조의6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등은 도지사에게 보지 제41호서식에 의하여 승인신</u></p>

제1호

공 보

1997. 7. 15(화요일)

울산광역시중구 조례 제44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 (과세의 근거) 울산광역시중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무공무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종합토지세

③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세

제4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1호

공 보

1997. 7. 15(화요일)

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허가등의 종목
3. 허가등의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제10조 (징수유예 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 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자체에 대하여 동일의 세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낸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3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4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구세심의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제1호

공 보

1997. 7. 15(화요일)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⑤ 구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보 통 세

제1절 면 허 세

제16조 (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자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7조 (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